

# 韓國 傳統服色과 染采에 관한 研究

蘇 晃 玉\*

<目 次>	
I. 序 言	V. 染料과 染色法
II. 服飾禁制의 意義	VI. 結 言
III. 服色制度의 變化	參考文獻
IV. 服色の 種類	Abstract

## I. 序 言

服飾의 根本은 그 構造에 있다기 보다는 그 衣次에 있는 것으로 衣次는 그 民族 그 나라의 生産性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地政學的 位置로 上古時代부터 中國 中原의 政權의 藩屏으로 終始한 느낌을 주는 것은 슬프나 事實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屬國이라기보다는 儀禮的인 朝貢으로 名分을 維持하면서 獨自的인 行政을 해온 것이니 또한 世界에 그 類例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中原에 強大國이 興起하면 武力으로 이를 對抗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對抗의 例도 있었지만) 이를 朝貢 貿易으로 糊塗하고 實利를 거두는 方向에서 恥辱的인 外交活動을 통하여 그 命脈을 維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新羅와 唐, 高麗와 遼·金·宋·元, 高麗와 明, 李朝와 明·淸의 關係가 그런 것이다.<sup>1)</sup>

어느 時代에나 禁制라 하는 것은 權力者의 立場에서 設定하여 制度的으로 施行되는 것이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데에는 많은 問題點을 갖게 마련인 것이다. 李朝에 있어서도 歷代에 걸쳐 每王마다 禁制에 대한 申飭 傳旨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人間의 奢侈本能 등으로 이러한 禁

制가 제대로 履行되지 않았던 것을 推測할 수 있다. 우리는 禁制 그 自體보다도 禁制를 위하여 設定한 項目을 통하여 構造的으로 服飾을 把握하며 이러한 禁制가 가지는 意義는 당시의 社會相 속에서도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服飾禁制를 통하여 服色の 變化를 整理하여 보며, 服飾에 나타난 染采에 대하여 染料나 染色方法 등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服飾 禁制의 意義

服飾 禁制는 階級的인 側面과 奢侈禁壓의 面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衣服禁制의 動因은 衣服의 機能 中の 生理的 對人感情에서 緣由하여 階級的 側面으로서의 機能과 美的 外觀에서 오는 奢侈에 對한 欲望을 어떻게 封建國家의 테두리 안에서 容認하여 주느냐에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兩側面의 움직임에 다시 부채질한 것은 우리나라가 邊邦으로 自處하여 中國의 文物이 들어오면서 衣服에 있어서도 國際的 變化要因이 重合되어 中國의 服色을 支配階級들의 儀章의 證標로 삼고 各階級의 衣服을 特殊化시켜 서로 犯越을 禁하고 다시 自己階級內에서도 上下 等威를 區分하게 된 것이다. 또한 手工業發達의 눈이 海外에까지 널리 확대되어 감에 따

\* 世宗大學 講師.

1) 金東旭, 李朝初의 服飾禁制, 中央大學校 論文集 第7輯, p.94, 1962.

라 進歩된 國家의 衣服 織物이 奢侈心을 刺戟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新羅 興德王 九年에 내린 服飾禁制令의 下敎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方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苟或故犯 固有常刑」<sup>2)</sup>

이라는 內容은 이러한 思想的 背景을 잘 表現하고 있다.

新羅에 있어서도 「只尙異方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라고 하여 이미 國際的인 交易이 衣服生活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注目할 만 하며, 高麗史에도

「閔霽……一日 王御經筵謂霽曰 聞禮曹定服色……然乎 對曰 服色欲禁異土之物……」<sup>3)</sup>

이라고 있어 服色을 定하는 것이 바로 外國產品을 禁戢하고자 하는 目的 아래 이루어진 例로써 볼 수 있다.

服色에 대한 禁制는 三國時代에 이미 階級的 側面으로 있어 왔지만 新羅 興德王 九年(834 A.D.)의 服色의 禁制<sup>4)</sup>는 보다 具體的인 것으로 衣服에서 부터 屋舍, 車騎, 器用에 이르기 까지 貴族王國으로서의 階級的 等差를 明示한 것이다.

이 色의 禁制는 女子服飾에만 있으나 이는 男服에도 그대로 適用될 것이다.<sup>5)</sup>

- 眞骨女 九(凡)色 禁赭黃
- 六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金屑紅
- 五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黃屑紅緋
- 四頭品女 禁赭黃 紫紫粉黃屑緋紅 減紫
- 平人女 與四頭品女同
- 이 禁制를 援用하면
- 王妃 赭黃
- 眞骨女 紫紫粉金屑江
- 六頭品女 緋
- 五頭品女 減紫
- 四頭品女
- 平人女

이보다 以前의 法興王때의 六部人의 服色은

- 自太大角干至大阿漚 紫衣
- 阿漚至級漚 緋衣
- 大奈麻 青衣
- 大舍至先沮知 黃衣

로 되어 있어 이 構造와 興德王 禁制는 거의 비슷하나 靑·黃色의 特異點이 보인다.

당시 唐本土에 있어서의 公服은 紫·緋·綠·靑이고 庶民들은 皂色이나 白色 밖에 입을 수 없었으며, 당시 唐帝로부터 新羅王에게 賜與한 冠服은 「紫羅繡袍」와 같이 紫色이었다. 다만 麗代에는 赭黃(緋)系統을 王의 常服으로 입었으므로 王이나 王妃의 服色으로서 無關했으리라 본다.

여기에서 興德王 禁制時의 四頭品女와 平人女의 모호한 부분은 減紫는 퇴색된 紫色을 말하는 것으로 五頭品女가 減茶, 四頭品女가 黃, 平人女가 皂色을 입었다면 法興王代의 그것과 對應이 될 수 있다.

한편 三國史記 職官 九誓幢 條에 보면 神文王代까지도 存在한 것으로<sup>6)</sup>

綠衿	誓幢	衿色	綠紫
紫衿			紫綠
白衿	(百濟民)		白靑
紫衿			
黃衿	(高句麗民)		赤黃
黑衿	(靺鞨國民)		黑赤
碧衿	(報德城民)		碧黃
赤衿	( " )		赤黑
靑衿	(百濟殘民)		靑白

衿色에 紫·緋·綠·靑·黃·赤·碧·黑·白 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白色은 平民, 黑色에 가까운 것으로 皂色은 僧侶, 黑色은 奴隸의 服色이다. 그러면 前記 法興王代 服色과의 差異는 靑·黃·碧·赤·綠色이다. 間色인 赭黃을 禁하였으므로 赤·黃을 빼고 靑·碧이 비슷하므로 이를 靑으로 統一하면 남은 것은 綠·靑色이다.

이렇게 되면 宋史 輿服志에,

「公服凡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今謂之常服 宋因唐制 三品以上 服紫 五品以上 服朱 七品以

2) 三國史記 卷33 雜志第2 色服.  
 3) 高麗史 108 列傳 卷 第21.  
 4) 三國史記卷33 雜志第2 色服.  
 5) 金東旭,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學 第1卷, 1971, p. 23.  
 6) 三國史記 第40 雜志 9 職官下.

上 服綠 九品以上 服青 其制曲頰大袖 下施 橫欄以革帶幘頭烏皮鞞 自天公至一命之士通服 之」<sup>7)</sup>

라고 있으므로 唐宋制로서의 紫·朱·綠·青色 과 對應이 되는 紫·緋·綠·靑이 新羅末期의 服色으로 보아 진다.

高麗는 光宗代에 中國 後周의 服制를 採用하 였으나 그 根本的 構造는 이 興德王代 構造와 別로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高麗 太祖는 新羅의 舊制를 그대로 쓰다가 光 宗에 이르러 後周의 歸化人 雙冀의 進言에 따라 百官의 四色公服을 定하였으나 여기 四色은 唐 制에서 發展된 後周의 制를 採用하였다고 믿어 지거니와 四色(紫·紅·綠·靑)에 따라 職品의 高下를 識別한다는 것은 이미 新羅 法興王 服制 에 있었고 이 自體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階級 的 衣服 階梯를 設定하고 있는 面에서 東洋 古 來의 衣服 禁制의 階級的 面을 實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에 다시 王服이 있고 王服에 있 어서도 冕服·公服·便服 等の 區別이 있고, 毅 宗代 詳定禮에 내려오면 더욱 더 整齊되므로 그 層階的 構造는 相當히 整備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sup>8)</sup>

高麗史에 보면<sup>9)</sup> 禁制에 대한 意見으로 新羅時 에는 公卿 百僚 庶人의 衣服 鞋襪에 品色이 있 었고 庶人 百姓은 文彩(絹織物)를 입을 수 없어 서 이러한 制度는 貴賤尊卑를 가르치는 것이었으 나, 高麗에 들어와서는 貴賤에 구애됨이 없이 任 意로 着服하여 官이 높되 집이 가난하면 이를 갖 추지 못하고, 職이 없더라도 집이 富하면 綾羅 錦繡를 입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나는 物

品은 好物이 적고 粗雜한 物件이 많아 文彩之物 은 다 土産이 아니므로 사람사람이 다 입을면 他國의 使臣을 맞이 할 때 百官의 禮服이 法을 얻지 못하여 恥辱을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 國 新羅의 法에 따라 公欄穿執을 갖추고 朝廷에 서 袜靴 絲鞋 革履를 때에 따라 신고, 庶人들은 外産物인 文彩紗縠을 입을 못하게 하고 但只 國 産인 紬絹을 쓰게 하라고 한 것은 여러가지의 問題點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新羅·高麗時代의 服飾禁制에 대한 強硬策에 도 불구하고 奢侈의 根源이 되는 病弊는 없었지 않았던 것으로 그 禁制施策은 李朝로 이어져 儉約을 권장하고 私利益을 피하려는 무리들을 禁節하기 위하여 禁制施을 여러가지로 내렸다.

太祖 3年 6月에 都評議使司가 上言하기를 即位 創業初에 모든 服飾 器玩은 儉約을 좃고 萬 世에 法을 드리워야 하며, 紗羅綾綺와 各色 眞 彩(顔料)는 外國産이며, 金銀은 每歲 上國에 進 貢하는 것으로 이어대기 힘든 物件으로 上下가 通用하고 사람들이 定志가 없어져 利益을 보려 는 무리들이 貿易을 피하여 潛行 越境하여 鬻端 이 생기어 그 害가 적지 않으니, 이제부터 紗羅 綾綺와 金銀粧飾品은 進上하는 것이나 宮家用이 나 各官들 品帶用 外에는 兩府以下 庶民에 이르 기까지 一切 이를 禁하고 公私家舍나 寺院의 眞 彩(眞丹青)를 禁하고, 金玉纓子是 承旨以上 外 는 이를 禁하고, 油蜜果와 色絲花鳳 金銀着彩花 草(造花)는 上國使臣 燕享 外는 이를 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10)</sup>

文宗元年 4月 條에 보면 文宗은 使臣들이 이 러한 弊를 끼치는 것은 婦女服飾에 彩帛을 쓰기

7) 宋史 卷 153 輿服… …106 …… 5.

8) 金東旭, 李朝初의 服飾 禁制, 中央大學校 論文集 第7, 1962, p. 85.

9) 高麗史 卷 …93 列傳 卷… 6

「成宗元年…… 上書曰……」

新羅之時 公卿百僚庶人衣服鞋襪 各有品色 公卿百僚 朝會則著公欄具穿執 退朝則逐便服之 庶人百姓不得服 文彩 所以別貴賤尊卑也 由是公欄雖非土産 百僚自足用之 我朝自太祖以來 勿論貴賤 任意服着 官雖高而家貧 則不能備公欄 雖無職而家富則用綾羅錦繡 我國土宜好物少而麤物多 文彩之物皆非土産 而人人得服則恐於他 國使臣迎接之時 百官禮服不得如法 以取恥焉 乞令百僚朝會一依中國及新羅之制 具公欄穿執 奏事之時 着袜 靴絲鞋革履 庶人不得着文彩紗縠 但用紬絹……」

10) 太祖實錄 卷六

「夏六月己巳朔 都評議使司上言 今當即位創始之初 凡工作服飾器玩務從儉約 垂法萬世紗羅綾綺各色直彩異方 難繼之物 金銀又每歲進貢上國尤爲難繼 而乃上下通用 人無定志況見利之徒因謀貿易 潛行越境 以生蜜端 其 害不淺 願自今紗羅綾綺及金銀粧飾之物 進上服用及各官品帶外兩府以下 至於庶人一皆禁止 公私家舍及寺院 勿用眞彩 承旨以上外 不許用金玉纓子 其鬻油果絲花鳳金銀着彩花草上國使臣燕享外亦皆禁斷」

때문에 冒法者가 頗多하니 婦女服飾의 彩帛을 禁하고 本國 土產品으로 하면 어떻냐고 하니 同副承旨 姜孟卿이 對하여 말하기를 世宗朝에 이미 禁令이 있는데 我國習俗이 이미 오래인지라 急遽하고 칠 수 없을 뿐 아니라 婦女子들이 閨中에서 生活하니 士大夫의 內房에 冒入하여 禁斷하기도 難勢하다고 하는 것으로, 奢侈品 條目에 金銀紗羅綾段 뿐만 아니라 染料도 여기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染料中에 絳色을 들이는 蘇木은 太宗實錄 11年 2月條에

「命禁各道進獻器玩絳色 上曰蘇木非本國所產器玩宜用質素」<sup>12)</sup>

라 하여 本國土産이 아니고 倭人들이 貿易해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世宗實錄 8年 12月 條에

「禮曹據西平館手本啓 今來客人等進告丹木 海外南蠻國所產 本國相距水路一年程 艱苦貿易而來 今絳紬一匹准二十斤過重 願改以十五六斤請依所願施行 從之」<sup>13)</sup>

라 하여 蘇木을 倭人이 가지고 오지만 其實은 倭産이 아니라 海外 南蠻國産으로 海路 1年餘가 걸리는 西洋物品으로, 絳紬 1匹에 20斤을 15, 6斤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여 容認해 준 일이 있다.

### Ⅲ. 服色 制度의 變化

新羅 法興王 7年에 梁制와 北魏制를 모방한 四色公服制定에 이어, 다시 眞德王 2年(648·A.D.)에는 金春秋를 唐에 보내어 唐制公服을 導入하여 明年 3年부터 施行하여 「以夷易華」하고, 文

武王 4年에 婦人服을 模倣하여 「依冠同於中國」 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4)</sup>

法興王代 公服의 色順位는 紫·緋·靑·黃으로 唐制의 紫·緋·綠·碧(唐制袴褶之制)으로 약간 다르다. 이것은 法興王代의 大舍에서 先祖知까지 下品の 服色으로서의 「黃色」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王이 赭黃袍를 입게 된 것 같다.<sup>15)</sup>

이것은 唐書 車服志에

「隋文帝聽朝之服以赭黃文綾袍 烏紗帽折上巾 六合鞬與貴臣通服 唯天子之帶有十三環文臣又有平頂小樣巾 百官常服同於庶人 至唐高祖以赭黃袍巾帶爲常服 腰帶者摺垂頭以下名曰鉞尾 取順下之義 一品二品鑄以金 六品以上以犀 九品以上以銀 庶人以鐵 既而天子袍衫 稍由赤黃 遂禁臣民服」<sup>16)</sup>

이라 하여 처음에 隋에서는 赭黃袍가 貴臣 通服이 되고 天子의 帶는 13環으로 區別하였던 것을 唐의 高祖에 이르러 赭黃袍를 天子의 袍衫으로 하고 腰帶도 玉·金·犀·銀·鐵 등으로 等下를 주어 一般 臣民에서 赭黃袍를 禁하였다.

이어서 新羅의 興德王 9年(834·A.D)의 服色 禁制에는 眞骨女條에

「凡色禁赭黃」<sup>17)</sup>

이라 하여 赭黃色을 眞骨女에서 禁하고 있는 것을 보아 王服으로 입었을 것이다. 이것은 高麗史에

「視朝之服 國初用赭黃袍」<sup>18)</sup>

라 하였으므로 新羅의 王服(公服)이 赭黃袍였음을 알 수 있다. 文宗代에 服色이 問題가 되어 備禮時에 紅黃色을 입었음을 알 수 있고, 毅宗朝의 詳定禮에 赭黃袍 梔黃袍를 입었다.<sup>19)</sup>

11) 文宗實錄 卷 7

「都承旨季旬啓 赴京使臣多載米布以質彩帛者滔滔皆是 由是驛馬疲困弊固不貲 請於元額糧米三十斗加十斗 魚五十尾加五十尾 仍定馱馬之數以禁之 上曰大抵臣子不謀貨利則可矣 今婦女服飾 皆用彩帛故 冒法者頗多 婦女服飾禁用彩帛 今着本國所產之物何如 同副承旨姜孟卿 對曰 世宗朝婦女服飾及婚姻資粧禁用彩帛已有著令 然我國習俗已久未能遽革 且婦女服彩帛者 皆在閨壺 誰能冒入士大夫之家而糾摘乎 是以難勢禁斷……」

12) 太宗實錄 卷 21.

13) 世宗實錄 卷 34.

14) 三國史記 卷 第33 雜誌 第 2.

15) 金東旭, 李朝初의 服飾禁制, p. 95.

16) 唐書 卷 24, 車服志.

17) 三國史記 卷33 雜誌 2 色服.

18) 高麗史 卷72 第26 輿服志.

19) 高麗史 卷72 第26 輿服志.

隋書 百濟條에 依하면 官品에 따라 紫帶·皂帶·赤帶·青帶·黃帶·白帶 등으로 區分되어 있다.<sup>20)</sup>

高麗의 王服은 服色에 있어서 皇帝의 服色에 近似하게 比擬되었음은 爾後의 王服으로 보아서 特記할 일이다. 忠烈王代에도 元服屬 이후에도 胡服을 하기도 하였으나 黃袍를 服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李朝 太祖代에 와서 黃色의 禁令은 表面化하였다. 이 黃色의 禁令이 나오게 된 動機는 世宗 實錄 26年 閏7월에

「高麗恭愍王時 僭用十二章之服風物皆用黃色 太祖尙未盡革」

이라 있어 推測할 수 있는데, 黃色은 中國 皇帝의 色이라 禁令을 내린 것으로 다시 太祖를 包涵한 高麗 傳來의 君王服이기 때문에 禁令을 내린 것이다.

黃色의 禁令은 太祖 實錄 5年 6月 「乙未嚴男女 黃色服」<sup>22)</sup>에 이어 7年 6月에는 尊卑를 가르고, 上下의 章別를 위하여 黃色을 禁하고 灰色·白色을 禁斷한 것으로 進上 服章을 가르기 위한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여기서 灰色禁令은 訥齋集에

「禁欲灰色者 其妖言 且爲言以五行相克」<sup>24)</sup>

이라 하여 五行相克에서 온 것이고, 白衣에 대한 禁令은 東方은 木이요 靑이고, 白은 金과 西

方을 이르는 것이므로, 白紵를 입음은 「金克木」 「木制金」의 象이기 때문에 禁制하는 說(星湖僊說類選, 卷之九下 論史門五·高麗史 恭愍王六年 司天監于必興上言)과 明宗朝 曹植의 上疏에 있는 바와 같이 「音哀服素」라 하여 素服을 禁하였다는 說(林下筆記 卷16 文獻指掌編), 嘉靖乙丑以後 累次의 國恤을 經하고 素衣를 服用하였다는 說(芝峰類說 卷3 法禁)과 같이 白은 喪服이라는 데서 이를 禁制하여야 한다는 說이 있다.

禁令에도 불구하고 官員들 사이에서도 잘 履行되지 않았음인지 계속하여 「禁黃色于中外」<sup>25)</sup> 「禁白色衣服」<sup>26)</sup> 「禁服灰色」<sup>27)</sup> 등의 禁令이 내리고 있다.

玉色에 대하여 太宗 實錄에

「壬戌命母禁服玉色 許令深深(染)穿着」<sup>28)</sup>

「復禁玉色衣」<sup>29)</sup>

라 하여 禁止하였으나 世宗 實錄에 보면, 土紅과 玉色은 素服에 가깝다고 하여 禁하는 한편 官員 外의 一般人的 白衣를 容認하였다.<sup>30)</sup>

또한 世宗 元年에는

「命禁近黃色衣」<sup>31)</sup>

라 하여 黃色에 가까운 것도 禁하고 있으며, 다시 黃色에 가깝다고 하여 朱紅鄉絲도 禁하고 進上 外의 外方 方物은 朱紅도 禁하여 이미 使用中인 朱柒器는 火印을 하고 使用하라고 上啓하고 있다.<sup>32)</sup> 이 黃色에 가까운 色의 하나가 土紅色

「凡正至節日 朝賀大觀殿大宴 儀鳳門宣赦 奉恩寺謁祖眞 八關會 燃燈大會 祈穀園丘 出宮王太子納妃 醮戒冊 王妃 王太子臨軒發冊服緒黃袍 燃燈小會則 服梔黃衣」

20)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 百濟條.

21) 高麗史 卷72.

「忠烈王二十七年五月 服色擬於上國 以芝黃代緒袍 未幾復用黃袍」

22) 太祖 實錄 卷9.

23) 太祖 實錄 卷14.

「癸酉 憲司上言 先王衣服之制 尊卑有等 正間之色 不可紊亂也 我國家上下服用 尙未有章 願自今進上服用皆 正色 凡男女黃色灰色縞素之衣一皆禁斷 上允之」

24) 訥齋集 卷4 便宜 三十二事, 訥齋는 梁誠之 太宗 15年生 成宗 13年歿.

25) 太宗 實錄 元年 5月 卷1.

26) 太宗 實錄 元年 5月 卷1.

27) 太宗 實錄 2年 3月 卷3.

28) 太宗 實錄 15年 11月 卷30.

29) 太完 實錄 16年 4月 卷31.

30) 世宗 實錄 6年 10月 卷26

「禮曹啓 土紅玉色衣服近於素服 願自今使臣迎接時及大小朝會不許穿着 常時令深染穿着從之」 世宗 實錄 7年 10月 卷30

「傳旨司憲府 自今有職事人員外勿禁白衣」

31) 世宗 實錄 元年 正月 卷3.

32) 世宗 實錄 元年 6月 卷4.

이고 茶割色이 되는데, 茶割色을 얹게 하면 正黃色이 되는 것이다.

黃色에 대하여 太祖·太宗·世宗 3대에 걸쳐서 行하여진 黃色禁止의 苦衷가 世宗實錄에

「庚子 上謂兵曹判書韓確 禮曹判書金宗瑞 右參贊李叔疇曰 高麗愍王時 僭用十二章之服 凡物皆用黃色 太祖尙未盡革 太宗朝黃色之禁 至爲嚴明 載在典章 至于今日 宮中服飾 或用黃色 宮中則革之何難 中外大小男婦黃染衣服 申明痛禁 何如 僉曰 令憲府禁斷爲便」<sup>33)</sup>

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世宗實錄에

「禮曹啓 朝官於常時 朝會令著黑麻布及苧布藍色紅色黑色衣 從之」<sup>34)</sup>

라 하여 常服에 藍·紅·黑을 朝官에게 許容하였고, 成宗實錄 16年 11월에 보면 紺茶褐·鴨頭綠·草綠 등을 世宗 當時에 입고 있었는데 成宗 때에는 澣濯의 便利로 土紅을 좋아해서 美的으로 보아 그리 光彩가 나지않아 上記 服色과 서로 通用해서 입으라는 傳敎가 나기까지 하였다.<sup>35)</sup>

#### IV. 服色の 種類

服色制度에 나타나는 色은 黃·緋·靑·紫가 基本이 되어 있는데, 鷄林志에 보면 緇(黑)·玄·素·絳·緋·纁·縹(淺絳色)·縹(玉色)·緗(雅靑色)·黓(淺靑色) 등을 基本으로 하여, 染色이 發達되면서 부터 中間色으로 연두색·草綠色·다황색·진황색·일남색·남송색·洋藍色·반물색·玉色·靑色·眞紅色·松花色·白色·洋草綠色·洋玉色·粉紅色·眞粉紅色·紫色·紫赤色·취월장색·회보라색·藍色·雅靑色·柳綠色·豆綠色·鴨豆綠色·黃色·淡黃色 등의 色을 볼 수 있다.

거의 같은 色이라 하더라도 表現에 따라 더

多様な 色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閨合叢書나 宮中 衣櫥撥記 等에도 紅色·大紅色·朱黃色·礪紅色·茜紅色·土紅色·木紅色·土黃色·桃紅色·靑玄色·柑茶褐色·茶割色·紫的色·品月色·柳靑色·雲白色·鵝黃色·갈매색·회보라색·양보라색·연초록색·팔유청색·목단색·진보라색·駝色·쥐색·灰色·金鄉色 등이 보이니 色의 表現으로만 보아서는 彩度나 明度の 差異를 明確히 알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鳩色(비둘기色)과 灰色은 僧服色으로 먹을 갈아 물들이거나 숯겨멍을 갈아서 물을 들였으며, 黑色은 열게 물을 들이면 은은한 玉色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駝色(약대빛)은 黃色系例의 色으로 팔배나무(杜梨)껍질을 벗겨 진히 고아 백반가루를 타서 종이에 들이면 梔子色 보다 더 곱다고 하였으며, 黃茶·苦楝根·香薷를 달여 흰 모시에 들이면 고운 베빛과 같고, 金錢花를 달여서 검금(黑礬)을 타서 물을 들이면 고운 참황빛(沈香色)이 되기도 한다.

靑暗色은 진한 푸른색이고 鸞哥綠은 葱翠靑色으로 銅呈色의 灰釉가 酸化鹽으로 푸르게 된 빛이다. 柳靑素는 버들의 푸른색(柳綠)과 같으며, 柳靑色은 살구빛색 또는 행자색(杏紫色)과 비슷하며, 靑玄色은 검푸른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라색의 紫色系例은 지치과의 芝草·紫草·지치라고 하는 植物에 의한 染色으로 芝草 속가루를 담가 주머니에 넣어 하루를 지난 다음에 더운물에 풀어 深淺을 조절하여 물을 들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라빛도 도라지꽃빛(桔梗花色)이 붉은 가지색(紫茄色)보다 곱다고도 한다. 內玄色은 짙은 검은색에 약간의 자주빛이 감도는 색이며, 黑絲暗色은 검은색의 더 진한 表現인 듯하다.

赤色은 明度別로 緋·赭·纁·朱·紺·緗·玄·縹의 順으로 指稱한 것이 考工記에

「戶曾啓進上外禁用朱紅鄉絲可用處禁用唐眞絲 苧有位田加屬令加尺數上納進獻 進上矢筒外禁飾豹尾 且令各官貢豹尾 從之 仍命已成朱柒器着火印用之 外方方物亦勿用朱紅」

33) 世宗實錄 26年 閏7月 卷 105.

34) 世宗實錄 元金 7月 卷 4.

35) 成宗實錄 16年 11月 卷 185.

「辛未議服色事于領敦寧以上 僉議以爲通着無妨 遂傳旨禮曹曰 大小人員常着表衣色無定制故在 祖宗朝或用紺茶褐 或用鴨頭綠 或用草綠 近年以來皆以澣濯之便 並尙土紅 甚無朝彩 自今上項雜色隨宜穿着 土紅外非中朝使臣接待時則凡用吉服通用」

「三入爲五入爲緇七入爲緇(註:三入成纁又再染以黑爲緇禮作爵言如爵頭色也. 又再染以黑乃成緇矣玄色在緇緇之間其六入歟. 士冠禮註:三入爲纁朱則四入歟疏三染皆爲淺絳四入爲朱毛傳謂之淡纁至五入爲緇七入爲緇爲染黑法蓋以纁入黑則爲紺以紺入黑則爲緇其色赤多而黑少故以爵頭爲喻) 爾雅一染謂之緇(註今之紅) 再染謂之纁(註淺赤) 三染謂之纁(註絳也)」

라 하였고, 居家雜服攷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또한 明度·彩度に 따라 絳色(大赤色)과 紅色·緋色이 있어서 紅色은 鷄林類事 方言條에서는 眞紅이라 하여 緋色과 赤色도 마찬가지로이다.

本 紅色은 天工開物에 의하면 蘇木에 의하여 染色된 紅色을 말하는 것이며, 大紅色은 紅花에 의해서 染色된 臙脂色이며 紅色이라고 하는 것은 丹木으로만 染色한 色이다. 蓮紅·桃紅·銀紅·水紅色은 紅花에 의해서 白絲에 濃淡으로 加減하여 染色한 것이다.<sup>36)</sup>

緋紅은 丹木과 深黃으로 染色한 色이며,<sup>37)</sup> 緋色은 약간의 黃味の 色으로 茜草에 의해서 染色하며 媒染劑에 따라서는 變化되어 絳色이 된다.<sup>38)</sup>

深緋는 茜根과 紫草에 의하여 染色된 紫朱色 系列로 淺緋는 茜根으로만 染色한 것을 말한다. 唐緋는 바탕을 鬱金으로 染色하고 後에 紅花를 使用하여 染色하는 것으로서 片紅의 量을 濃紅 75, 中紅 52에 대하여 112의 大量을 使用하는 深紅을 뜻하는 것이다. 土紅은 주로 染料가 아닌 朱土라고 하는 顏料를 물에 씻어 내고 그 찌꺼기를 아교에 섞어 染色한 것이다.<sup>39)</sup>

紫色은 赤色과 黑色의 中間色이라고 禮疏에서는 定義하였다. 즉 金色이 白이기 때문에 金克木하니 木色 靑인고로 靑白間色은 碧(연남빛)이라 하고, 木克土이기 때문에 土色黃이니 靑黃間色은 綠(연초록)이라 하고, 土克水이기 때문에

水色黑이니 黃黑間色은 黝(유록)라 하고, 水克火이기 때문에 火色赤이니 赤黑間色은 紫(자적)라 하고, 火克金이니 金色白인고로 赤白間色은 紅(분홍)이다<sup>40)</sup>하여 자주색을 意味한다.

## V. 染料와 染色法

新羅에 있어서 染織物 生産者는 歸化人 奴隸와 農民의 手工業者이나 이들은 麻希·絹 등을 織造하게 하고, 中國·日本과의 交易品과 貴族에 支給하는 것은 官營工匠이 生産해 내었다. 이들 官營工匠 中 染宮, 蘇芳典, 紅典에서 실을 染色하여 織造部署(朝霞房 23人, 錦典 14人, 綺典 8人)로 보내기도 하고 白色 織物의 染色을 分掌하였다. 또한 皮典中的 靴典에는 紫皮, 烏麁皺文紫皮 등이 있어 이는 皮革에 당시 最高級의 紫色染을 실시한 것으로 思料된다. 染色된 실에 의하여 만들어진 各種 織物은 罽·繡·錦·羅·總羅·野草羅·布紡羅·無文獨織·乘天羅·越羅·綿紬·小文綾, 金銀泥縵縵 등으로 紋樣織物 이외에도 縵縵과 같은 紋樣染色이 행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sup>41)</sup>

新羅의 染色에 關係되는 部署는 蘇芳典 母 6人, 染宮母 11人, 攢染典 母 6人, 疏典 母 6人, 漂典 母 6人, 紅典 母 6人 等 이었다.<sup>42)</sup>

高麗의 染織物은 官營工匠과 私營工匠에서 모두 生産하였는데, 都染署에서는 織物을 生産하는 掖庭局(掖庭院)의 錦匠, 羅匠, 綾匠, 絹匠 等, 雜織署의 錦匠, 羅匠, 綾匠, 絹匠 等과 裳服署(尙衣局)의 御衣奉供을 위한 繡匠, 帶匠 等の 여러 工匠을 위하여 朱黃·淡黃·紫丹·緋·藍·綠·靑·烏靑 等の 色을 染色하였다.<sup>43)</sup>

朝鮮時代의 染織은 官營手工業·獨立手工業·農村手工業·白丁手工業의 形態로서 가장 활발하였던 것은 農村手工業의 織物生産이었으며,

36) 常變通考 卷之四 冠服染色.

37) 宋應星, 天工開物 諸色質料.

38) 李時珍, 本草綱目

「此即今染絳茜草也 染緋草葉似棗葉」

39) 李良燮, 韓國傳統紅染研究, 研究報告 第3輯, 建大 生活文化研究所, 1980, p.70.

40) 閨閣叢書, 鄭良婉譯, p.145.

41) 李良燮, 韓國傳統紫染研究, 研究報告 第3輯, 1979, p.6.

42) 三國史記, 卷三十九 雜誌 第八.

43) 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手工業이 점차로 分化組織化되고 染色生産도 官匠의 京工匠樣相이 靑染匠·紅染匠의 形態로 分掌되었다. 經國大典에 의한 染色關係 工匠은 本曹에 於赤匠 4人, 草染匠 6人, 尙衣院에 靑染匠 10人, 紅染匠 10人, 草染匠 4人, 濟用藍에는 荷葉綠匠 2人, 黃丹匠 2人, 紅染匠 10人, 靑染匠이 20人이었다.<sup>44)</sup>

先史時代의 染采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빛깔이 있는 흙(土)·돌(石) 또는 草汁 等 광물 내지는 植物染料로써 초보적인 染采 方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先史時代의 뒤를 이어서 中國의 漢代 染織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發展을 하여, 染料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朱砂·綠靑·紺靑·藍色 等 광물질로 染色하는 方法이 發達하고, 草木葉이나 木實 等の 煎汁에 浸染하는 方法이 發達하여 各種의 화려 찬란한 染采의 모습이 平染·彩繪로부터 捺染(摺文)·纈纈·縵縵·縵縵에 이르기까지 發展하였다.<sup>45)</sup>

舊唐書 高句麗條에 高句麗 王服은 五采로 染色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翰苑 高句麗條에는 비단을 織造하되 紫地纈文을 最上으로 여기며, 五色錦을 그 다음으로 삼았다(高麗記云 其人亦造錦 紫地纈文者 爲上 次有五色錦)고 한 것으로 보아 五色錦을 織造하였고, 紫地에 纈文을 하여 色彩가 찬란한 纈纈染까지 進報 發展하였다.

高句麗 古墳 壁畫에 나타난 染采의 例를<sup>46)</sup> 보면 多樣한 紋樣과 染色을 보이고 있는데, 白色, 織物에 紋樣染을 施工하는 例도 많지만 淡褐色地·赤褐色地·藤黃色地·藤灰色地·藤褐色地·藍色地·淡紅色地·黑色地·黃色地·朱色地·皂灰色地 等 各種 布織物과 絹織物 等の 화려한 옷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舊唐書 東夷傳 百濟條에 의하면, 百濟 官人의 衣服에 緋色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으니<sup>47)</sup> 이

것으로 百濟에 彩繪의 染采技法이 施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北史 新羅條에 新羅人들이 素絹에 다 그림을 그려서 衣服의 染采를 피하였음(服色尙畫素)을 알 수 있고, 新羅 興德王때에 士女衣服의 纈纈을 禁한 記錄이 있다. 한편 日本 飛鳥時代와 天平時代의 찬란한 染采技術은<sup>48)</sup> 百濟와 新羅에서 큰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新羅·百濟에서도 彩繪로부터 捺染·縵縵·縵縵·縵縵 등 여러 가지 染采方法<sup>49)</sup>이 이루어 졌으리라고 본다.

縵縵은 이미 唐代에서 行하여진 方法으로 文樣을 도려낸 두장의 엷은 판대기로 絹布를 물리고(夾) 도려낸 部分부터 물들여 그 뒤 이 엷은 판대기를 떼어 文樣을 물들이는 方法이며, 縵縵은 실로 布帛을 졸라매어 이를 물들이는 方法이다.<sup>50)</sup>

우리나라의 傳統染色은 地理的 條件 等으로 染料植物에 主로 依存되었다. 植物染料의 染色은 가장 오랜 時代에는 果實이나 꽃·잎 등의 染色이라기 보다는 摺染法으로 行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漸次로 汁을 짜서 染色하게 되고, 藥劑와 같이 染料를 달여서 使用하게 되었는데 大部分의 植物에 含有된 多色成分으로 만드는 時間과 溫度에 따라서 나오는 成分이 다르고 媒染劑에 따라 色相이 더욱 달라지므로 오랜 經驗을 통하여 필요한 色素成分이 가장 많이 抽出되는 條件을 알고 그것을 口傳으로 전하였다. 大部分의 染料는 이 煎汁染色法이 使用되나 紫根 같은 것은 抽出溫度에 따라서 色相이 달라지고 主로 低溫湯抽出에서 染色이 行해진다. 그러나 紅花는 水溶性의 黃色色素를 물에서 溶出해 낸후에 灰汁을 넣어 赤色色素를 抽出하고 酸을 加하여 發色固着시킨다. 그 밖에 還元藥劑에 의한 染液抽出法에 의하지 않고는 抽出이 완벽치 않은 染材로 藍이 있다. 還元劑가 없었던 時代

44) 經國大典 工典 工匠.

45) 李殷昌, 韓國服飾의 歷史, p.153.

46)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4 壁畫, 圖片 1~101, 1974.

47) 三國史記 卷 33 雜志 2 色服條

「……官人 畫緋爲衣 銀花飾冠 庶人 不得衣緋紫」

48) 明石染人, 染織史考, 飛鳥寧樂時代의 色彩について, pp.160~173, 天平時代의 染織工藝に就いて, pp.1~40, 1927.

49) 李如星, 朝鮮服飾考, pp.303~321, 1947.

50)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pp.7~9, 1970.

에는 微生物을 繁殖시켜 水中의 酸素를 消費하고 더욱 水中에서 酸素를 取하면 還元作用이 일어나 不溶性 色素가 還元溶解되어 染色 後 空氣中에서 酸化 發色되어 不溶性의 本來의 色素로 돌아가 堅牢한 染色이 되게 하였다. 이상의 어떤 抽出法에 의한 色素抽出이든지 染色은 淡色에서 여러번 반복 浸染함으로써 濃色으로 染色되도록 해야 한다.<sup>51)</sup>

藍染(靑染)은 마디풀科의 一年草인 쪽잎<sup>52)</sup>을 染料로 使用하는데, 本草綱目에는 줄기와 잎을 모두 靑染에 使用한다<sup>53)</sup> 하였으나, 줄기보다는 잎이 좋은 染料가 된다. 藍種의 印度藍·菘藍·蓼藍·山藍 등에는 種類와 部位에 따라 순수한 靑色素 이외에도 赤靑·黃靑·褐靑 등의 色素가 含有되어 있고 純靑의 含有率은 30~90%이다.

紅花<sup>54)</sup>는 菊科의 一年草로서 꽃잎에 水溶性의 黃色色素와 不溶性의 赤色色素의 두 種類가 含有되어 있어 黃色과 紅色의 染料가 된다. 紅色 植物染料로는 紅花를 비롯하여 蘇方木<sup>55)</sup>과 茜<sup>56)</sup>이 있으며, 灰汁中和에 使用한 酸類에는 五味子·梅實·烏梅 등이 있다.

黃色染料植物에는 梔子,<sup>57)</sup> 黃蘗,<sup>58)</sup> 鬱金,<sup>59)</sup>

黃連,<sup>60)</sup> 紅花, 薑草,<sup>61)</sup> 槐花<sup>62)</sup> 등이 있다.

紫色은 紫根<sup>63)</sup>에 의하여 染色을 행할 때 染料 植物의 色素採取에서, 媒染劑·染色條件에 따라서 色相이 달라 지는데, 紫根에 灰汁媒染을 행하면 보라에서 靑色系로 發色되고, 不純物이 섞이지 않는 紫根으로 染色한 後 酸을 加하면 紫에서 紅色에 가까와 진다. 따라서 紫色은 紫·紫赤·靑 등으로 記錄되고 있다.<sup>64)</sup>

## VI. 結 言

우리나라의 服飾 構造는 二重的 組織을 지니는 것으로 國俗에 대한 漢制가 對立되어 있었으며, 中國服飾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有織者 官吏들을 中心으로 하여 上層社會에 襲用되어 階級的인 構造로서 近千年 동안 章服되어 왔으나 國俗을 同化시키지는 못하였다. 服色에 대한 染采의 禁止는 奢侈壓과 階級的인 側面 등에서 엄격한 區分을 가르는 것으로, 織物의 種類別과 아울러 많은 禁止令이 빈번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時代에 따른 독특한 色의 文化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 參 考 文 獻

- 金富軾, 三國史記, 朝鮮史學會本, 1940.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高麗史, 鄭麟趾.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55.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鄭良婉譯  
 洪萬選, 山林經濟  
 徐有榘, 林園十六志  
 尙方定例  
 常變通考

- 51) 韓國民俗大觀,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p. 340, 1980.  
 52) 學名 *Persicaria tinctoria* Gross, 鄭台鉉, 韓國動植物圖鑑.  
 53) 本草綱目, 李時珍  
 「藍實生河內平澤其莖葉可以染靑」  
 54) 學名 *Carthamus tinctorius* Linne. 黃色色素 saflow yellow, 赤色 carthamin.  
 55) 學名 *Caesalpinia Sappan* L.  
 56) 學名 *Ruiba Akane* Nakai.  
 57) 學名 *Gardenia jasminoides* Ellis *Gardenia florida* L. *Gardenia lucida* Roxb.  
 58) 學名 *Phellodendron Ruprecht*.  
 59) 學名 *Curcuma longa*.  
 60) 學名 *Plugiorhegma dubium* Maximowicz.  
 61) 學名 *Arthraxon hispidus*(Thunberg) MAKINO Var. *brevista*(Rgel) Hera.  
 62) 學名 *Styphnolobium japonicum* Linne Schott.  
 63) 學名 *Lithospermum erythrorhizon* Shiebold & Zuccarini.  
 64) 李良燮, 韓國傳統紫染研究, p. 52.

李灑，星湖僊說類選

宋史

唐書

訥齋集

徐兢，高麗圖經

崔恒，經國大典

李時珍，本草綱目

宋應星，天工開物

金東旭，韓國服飾史研究，亞細亞文化社，1973.

石宙善，韓國服飾史，寶智齋，1978.

柳喜卿，韓國服飾史 研究，梨花女大出版部，1977.

李殷昌，韓國服飾의 歷史，教養國史叢書 29，1978.

金元龍，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社，1973.

鄭台鉉，韓國動植物圖鑑.

韓國民俗大觀，高大 民族文化 研究所，1980.

明石染人，染織史考，東京 磯部甲陽堂，1927.

原田淑人，唐代の服飾，東京，東洋文庫，1970.

金東旭，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東洋學 第1卷，1971.

金東旭，李朝初의 服飾禁制，中央大學校 論文集 第7輯，1962.

李良燮，韓國傳統紫染研究，研究報告 第3輯，建大 生活文化研究所，1979.

———，韓國傳統紅染研究，研究報告 第4輯，建大 生活文化研究所，1980.

———，韓國傳統黃染研究，服飾 第四號，韓國服飾學會，1981.

<Abstract>

## A Research on Dye and Color in Korean Traditional Colors of Clothing

Soh, Hwang Ok

The idea of King Hungdok's prohibition of clothing was to restrict the use of chinese-made cloth on the one hand and to compell his people to use Korean-made cloth for their apparel on the other.

The prohibition of clothing sprang from King Hungdok's aspiration to restore his dynasty that had been falling due to the repeated drought disaster and luxurious living of the aristocracy.

Safflower, Rubeaceae roots and Sapan wood are well known as some of the earliest natural red-dyes, exhibiting beautiful red-clolor in our anciet cutural tradition.

The color yellow was considered from ancient time to the Chosun Dynasty as the central color. Thus, this color became the royal color for the costumes in the palace.

Those plants used to make the color yellow are : Gardenia, phellodendron amurense, Turmeric, coptis, safflower, Arthraxon hispidus, Styphnolobium japonicum.

Shikon, root of violet plant, is well known as one of the earliest natural days.

By repeating the difficult process of making various dyes constantly during many centuries, the Korean people developed the marvelous technique of making natural color.